

대학원학위수여규정시행내규

제정 1999. 3. 1.

변경 2021. 5. 4.

제11조 (심사구분)

본 대학원의 석사, 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논문계획발표와 본 논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2조 (심사방법)

본 대학원의 석사, 박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논문계획발표

가. 논문제출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1개학기전에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계획 발표 일정에 의거 학과교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 (변경 2001.6.27)

나. 학과주임교수는 참석교수의 의견을 들어 발표자의 논문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논문계획발표의 진행방법 및 수정, 재심의, 통과 등 일련의 세부적인 지도절차에 대하여는 학과주임교수 책임하에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학과주임교수는 논문계획발표에 대한 승인여부를 소정양식에 의거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별 발표요지 및 발표초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논문계획발표의 제목 및 주제는 자기 본 논문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변경 2001.6.27)

마. 당해 학기내 논문계획발표의 승인 절차를 끝내지 않은 논문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에 본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2. 본 논문심사

가. 본 논문심사를 위한 학위청구논문은 심사 1주일 전에 해당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논문심사는 각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행하며, 석사학위청구논문은 3회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5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 본 논문 심사의 합격여부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2/3찬성으로 결정하며,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라. 본 논문심사의 방법은 논문계획발표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잘 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관련하여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마. 본 논문심사는 심사일정계획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일정계획서는 심사위원 구성직 후 심사위원장과 지도교수의 협의를 거쳐 학과주임교수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직전학기 논문계획발표 내용중 논문제목 및 주제가 본논문심사시 유사논문으로 인정하여 심사할 경우는 해당 논문지도교수가 논문제목 및 주제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되 그 변경사유가 학문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신설 2001.6.27)